

#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 환경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세기의 시대적 추세로 자리 잡은 RoHS, WEEE 등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한 최신 정보와 수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07.4.16.~17. 양일에 걸쳐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전문가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세계적으로 지구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제품의 제조·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따른 환경오염을 통제하려는 노력 역시 강화됨에 따라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환경규제가 유럽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에서 불기 시작한 환경규제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해외의 환경규제 파악과 대응은 수출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으나 전문 인력, 자금, 기술력 등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부족 등으로 여전히 대응책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소기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겪는 어려움으로 40%가 '정보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 규제의 개략적 내용 파악 및 대응의 필요성 공감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떤 절차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차원의 혼란 여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131개 수출중소기업 대상으로 설문(06.11)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RoHS, REACH, EuP, WEEE 등 업계의 관심이 큰 주요 환경규제에 대해 중국, 유럽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규제의 핵심과 해법을 설명하고 규제대응 전문가들이 각종 관련정보를 전시하는 한편, 기업 실무자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참가자들이 규제대응에 필요한 종합 정보를 한 자리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China RoHS 입안부서인 중국 정보산업부(MII)의 표준전문가 Vicky Lu 박사를 초빙하여 최근 제정된 China RoHS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활동 중인 구주산업환경협의회 박대영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유럽 현지의 REACH 대응 동향을 국내에 전파하는 한편 기업 실무자들이 규제대응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강의실 외부에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하여 실무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무역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에 미치는 무역저해효과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6/EC
- 시기/대상 : '03. 2. 13/전기·전자제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폐전기전자제품의 발생 억제(사전예방)
- 재사용, 재활용 등을 통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최종 처리량 저감
-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전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

– 주요내용

- 분리회수 시스템 운영, 수거처리비용(개별 생산자 또는 공동으로 부담) 및 재활용마크 부착( '05.8.13부터 적용)
- 생산자의 의무재활용 비율 부과( '07.1.1부터 적용)

● 진행현황

구 분	대상품목	Recovery	Recycle/Reuse
대형가전, 자동판매기	냉장고, 세탁기, 자동판매기 등	평균 중량의 80%	평균 중량의 75%
IT·통신장비, 소비가전	컴퓨터, 프린터, TV, 라디오, 팩스 등	평균 중량의 75%	평균 중량의 65%
소형가전, 전동공구, 완구 및 스포츠 장비, 조명장비, 검사통계기기 등	청소기, 드릴, 비디오게임, 재봉틀, 연기검출기 등	평균 중량의 70%	평균 중량의 50%
가스방전램프(네온사인 등)	-	-	평균 중량의 80%

- EU 회원국의 자국법 제정은 완료되었으며 각 국별 Recycling Scheme의 사업자가 선정 중에 있음
- 현재 국내 제조 기업은 3~5개국에 수거처리비용을 납부하고 있음

● 향후전망

- '08. 12. 31까지 유럽의회와 의사회에서 강화된 생산자 의무재활용 비율을 마련할 예정

□ RoHS(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2/95/EC

- 시기/대상 : '06. 7. 1/전기전자제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재생과 처리
- 범위

- WEEE지침 대상에서 의료기기 및 통제장비(난방조절기, 조절실험장비 등)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 대·소형 가전제품, 정보통신장비, 소비자가전, 조명기기, 전동공구(대형 고정산업장비 제외), 완구 및 레저스포츠장비, 자동판매기

– 주요내용

- 전기·전자제품내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규제

※ 전기전자제품의 균질재료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

● 진행현황

물 질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	카드뮴
최대허용농도	각각 0.1%	0.01%

- 현재 국가별 시행법령 채택과 유해물질 시험분석방법 및 기기의 표준화, 최대포함 허용농도의 산정방식, 사용을 허가하는 면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정 중

● 향후전망

- 개별 국가 또는 업체는 RoHS 규제물질 이외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큼
- 선진 업체는 자사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기업홍보의 일환으로 대상유해물질을 확대하여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음

□ ELV(End of Life Vehicles, 폐차처리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0/53/EC
- 시기/대상 : '00. 10. 21/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자동차 개발 시 폐자동차의 활용을 고려하여 폐기물 감소 및 억제
    - 자동차 재활용을 위해 유해물질 사용 제한
  - 주요 내용
    - [폐차회수] 제조업체 및 판매업자는 '02년 7월부터 신규 등록차량을, '07년 7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의 무 부담
    - [재활용/회수 목표]
    - [관련정보제공] 신차종 부품의 재질표기 및 출시 6개월 내 해체 정보 제공
    - [폐기물 및 유해물질]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의 법규 규정량 이상 함유 금지('03. 7. 1이후 모든 판매 차량)

● 진행현황

구분	2006. 1부터	2015. 1부터
재활용(Recycling)	80% 이상	85% 이상
회수(Recovery)	85% 이상	95% 이상

- 생산자는 특정유해물질이 함유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하며 생산자의「자기 선언」을 인정함
- EU 회원국은 시장에서의 준법상황점검을 테스트 구매 검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부과

● 향후전망

- 재활용/회수 의무율이 향후 강화될 예정이지만 자동차 생산업체가 대부분 대기업으로 규제대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대기업은 자체 뿐 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 수준보다 훨씬 엄격한 환경관리를 시행 중

□ REACH(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법)

- 근거법률 : '07년 이후 공식채택 예정이나 규칙(Regulation)형태로 제정할 계획
  - ※규칙(Regulation)은 각 회원국이 자국법 정비를 통해 시행되는 지침(Directive)와 달리 회원국의 법령 정비 없이 자동 시행되는 EU의 법령임
- 시기/대상 : '07. 6./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평가의 책임소재를 EU 각 정부에서 제품 생산자로 변경하여 화학제품의 체계적인 책임관리
  - 주요 내용
    - [신물질 및 기존물질의 통합관리] 1톤이상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시험 및 등록의무와 위험물질 및 100톤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관리
    - [업체관리의무강화] 제조/수입업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
      -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화학물질 등록시기

구분	법률시행후 등록시기
1,000톤/년	3년 이내
100~1,000톤/년	6년 이내
1~100톤/년	11년 이내

- 진행현황
  - 현재 EU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공동결정 절차에 의해 입법절차가 진행 중
- 향후전망
  - 제도 시행 시 법률 준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여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회원국은 시장 감독 조치 기관을 설립하여 제품의 적합성 검증

- [적합성 검증] EU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에코디자인 이행수단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CE마킹을 부착해야 함

※ 이외에도 EU 에코라벨을 획득한 제품 및 EU 표준을 준수한 제품도 이행수단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진행현황
  - EU 집행위원회에서 에코디자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EuP 이행방안을 개발 중

※ IEC/TC111/WG2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에 관한 규격 작업 중

- 향후전망
  - EU 집행위원회에서 '07. 7. 6까지 에코디자인 요건 설정 우선대상품목을 포함한 작업 계획을 발표 예정
  - EU 각 회원국은 '07. 8. 11까지 동 지침에 따라 에코디자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완비할 예정

□ EuP(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s,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 근거법률 : Directive 2005/32/EC
- 시기/대상 : '05. 8. 11/에너지사용제품(단, 자동차 등 운송수단 제외)
- 규제개요
  - 규제목적
    -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및 비용감축으로 지속가능성 향상
    - 에너지효율을 높여 국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 주요 내용
    - [원칙] 제품을 설계할 때 제품의 기능성이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
    - [에코디자인 수행 의무화] 에코디자인 되지 않는 에너지 사용제품의 EU 시장진입 금지 및 전과정을 고려한 환경 정보 공개요구 : 자원채취, 생산, 포장/운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고려